

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2020. 4. 13.>

## **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**(제35조제3항 관련)

### 1. 표시기준

#### 가. 도안모형



소비자위생점검 합격

#### 나. 도안요령

- 1) 심볼마크 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은 노란색(Magneta 30 + Yellow 83)으로 하고, 심볼마크의 하단 밥그릇 색상은 회색(Black20)으로 한다.
- 2) 바탕색의 색상은 흰색(Cyan 0 + Magneta 0 + Yellow 0 + Black 0)으로 하고 하단의 "소비자 위생점검 합격"글씨는 검정색(black100)으로 하며, 슬로건은 Black 30으로 한다.
- 3) 문자의 활자체는 HY태백B로 하며 슬로건은 서울들국화로 한다.

### 2. 표시방법

가.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.

나.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### 3. 광고방법

가.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.

나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
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